

시민생활과 언론피해구제제도

- 사례분석적 접근

오 두 범(청주대학교수 ·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I.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 중 중요한 한 가지인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원래 언론중재제도의 궁극적 이념과 가치는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며, 공중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익을 담당하자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이러한 관점은 언론 중재 제도의 존재 가치를 ‘언론 창달’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본의 아니게 있을 수 있는 오보 또는 허보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분쟁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건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지 아니하고 원만한 해결에 이르게 함으로써 언론은 나름대로의 사회적 책임 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일부 성립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좀 다른 관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언론 중재 제도를 언론으로부터 소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 당사자로서의 시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시민은 사실 언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언론중재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뿐만 아니라 시민은 언론에 의하여 특정한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그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 법정 투쟁을 벌인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거기서 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법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일반 시민에게 있어 다만 중요한 것은 언론으로부터 본의 아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함께 그 피해에 의한 모멸감과 당혹감 그리고 억울함이라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피해 의식만이 있을 뿐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일반 시민으로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큰 법정 투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민 생활에 있어 커다란 불편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자기가 언론으로부터의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하였을 때 중재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실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 제도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시민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민원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의 편에서 보자는 것은 단지 「민권」 존중이 시민 민주 사회의 기본 이념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21세기 정보 및 사회적 환경은 더 이상 언론이 「능동적·자율적으로 알아서 가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언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를 시민 쪽으로 기울여 보는 것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언론 중재 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언론 중재의 바람직한 지향점

1) 안광식, “보도의 문제점과 평가·구제 제도”, 『한병구 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1989, p.

은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2002년도 중재신청현황

2002년도 충북 중재부에서는 총 16건의 중재 심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 지역의 인구·경제·사회·문화 등 일반 및 특수 의 제 지표에 있어 충북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부산, 대구 (경북)보다 많으며 대전(충남)과는 동수인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충북이 이 정도의 중재 건수를 유지하는 이유는 많은 언론사가 소재하고 있는 일부지역 을 제외하고는 언론기관의 수에 있어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충북지역이 언론 피해에 대한 의식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닌 가 한다. 참고로 전국 각 지방별 중재 처리 건수의 통계를 보면 <표1>과 같다.

<표1> 각 지역별 중재 심의사건 접수 처리 건수

지역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경남	충북	대전	부산	대구	강원	제주
중재 건수	307	45	39	25	20	16	16	15	14	7	7

보다 구체적으로 2002년도에 충북 중재부에서 접수·처리한 16건의 사건 내역은 <표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 2002년도 충북중재부 중재심리사건 처리 내역

사건번호	신청일	청구명	신청인 주장	처리 결과
2002충북중재1	2002. 1.31	정정	지입차주 부가세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신청인 회사의 차량이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02충북중재2	2002. 4.1	정정 → 반론	신청인이 사과 수출단지 조성 과정에서 00사과 영농조합으로부터 뇌물성 상납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합의
2002충북중재3	2002. 4.3	반론	신청인이 제출한 00시장 후보 공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02충북중재4	2002. 4.10	반론	신청인이 업무추진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합의

사건번호	신청일	청구명	신청인 주장	처리 결과
2002충북중재5	2002. 4.19	정정	수돗물 불소화가 인체에 해롭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취하
2002충북중재6	2002. 4.19	반론	수돗물 불소화가 인체에 해롭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7	2002. 4.25	정정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충치 예방 효과가 없으며, 인체에 해롭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취하
2002충북중재8	2002. 6.3.	정정	신청인이 과속 단속에 적발된 일이 없는데도 과속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9	2002. 7.5	반론	00군수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이 모 방송국주최 '후보자 토론회'출연이 제외되자 선관위 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0	2002. 7.23	반론	신청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1	2002. 7.23	반론	신청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2	2002. 7.23	반론	신청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반론보도	취하
2002충북중재13	2002. 7. 23	반론	신청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4	2002. 11.21	정정	신청인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뀐 사건과 관련, 상주가 병원장을 폭행한 사건이 정당한 행위였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02충북중재15	2002. 12.18	반론	모 대학교 총장과 그 측근들이 독선적이고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합의
2002충북중재16	2002. 12.30	정정	신청인 조합에 공금 횡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III. 주요 사례의 분석

상기의 2002년도 충북 중재부 중재 심리 사건을 중심으로 시민 생활의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 언론 분쟁 사건의 주요 사례들을 분석·재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신청인은 과속 단속에 걸린 적도 없고 과태료 상습 체납자는 더욱 아니다.”

이 보도는 방송이 교통 범칙금 체납 실태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충북 지역 경찰 자료에 근거하여 교통 범칙금 체납액이 2001년 한 해 동안 40억 원을 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방송화면 앵커는 과태료를 받아낼 강제 조항이 없는데다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마이크를 기자에게 넘겼다.

기자는 이동식 무인 속도 측정기가 도입되면서 과속 차량을 잡아내기 위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김모 운전자는 11번 과속 단속에 걸리고도 한 차례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20차례나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뻔뻔한 운전자도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임의의 차량 운전자를 인터뷰하면서 “이 차량 나중에 매매할 때 이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미루고 있어요”라는 멘트를 인용하였다.

신청인 주장 시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카메라를 든 일단의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인터뷰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무슨 인터뷰냐고 묻자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신청인은 “지난해 몰카맨에게 U턴을 할 때 점선을 벗어나 중앙선을 조금 넘는 장면을 찍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억울하여 해당 경찰서에 항의하러 갔다가 ‘억울하면 나중에 차를 매매할 때 한꺼번에 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방송에는 신청인이 한 말 중 일부를 삭제해 “차량 매매시 한꺼번에 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미루고 있다”라는 부분만 편집 보도되었다.

신청인은 기자에게 “나는 과태료 상습 체납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화면을 그냥 내보낼거나, 화면을 아예 빼든가 내보낼 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기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 달리 그대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명예 훼손 및 초상권 침해의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와 평가 방송사 측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내용을 수용하여 응분의 정정보도를 하여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이 사건을 평가하여 볼 때 방송 측에서는 기자의 보도 내용에 부합하는 그림(화면)을 떼야 하는데 기자의 보도 내용에 등장하는 ‘김 모’ 씨나 ‘20차례나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뻔뻔한 운전자’를 직접 만나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혀 다른 사람의 다른 취지의 발언에서 방송에 필요한 부분만 따서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그 사람인 양 내보냈고 그림의 신빙성까지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화면

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아니하였다.

방송사 측은 방송사 측대로 사정이 있다. 방송은 어떻게든 마감 시간에 맞추어 보도 완성품을 만들어야 하는 압력에 쫓기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언론 측의 강력한 책임 의식과 강력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안이라고 하겠다.

사례 2. “신청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한 일이 없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고속도로 00휴게소 조리실장 박 모 씨다. 신청인은 같은 조리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김모씨를 성희롱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일이 있고 또 같은 이유로 회사측 으로부터 00휴게소로 전직 조치를 당한 일이 있지만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원직에 복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청인 측의 이러한 무혐의·원직 복귀에 성희롱 피해 고발자 김 모 여직원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개적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였고 이에 박씨는 김씨를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검찰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김씨를 구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를 주장하던 김씨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구속까지 된 것은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의 결과라며 일부 시민 단체와 노조가 「구속 규탄」 및 「석방요구」를 하는 등 김씨 구명 운동에 나섰다.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 및 노조에 의한 「구속 규탄」 및 「석방요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김 모씨를 성희롱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박씨가 3개 신문과 2개 방송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보도문면 및 방송화면

A신문:(2002년 7월 2일자 3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대전·충북 지역 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 00회와 00노총 충북 지역 본부를 비롯한 대전·충북 5개 사회단체와 노조는 2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성희롱 이중 피해 여성 노동자 구속 규탄 및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노동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후략)

(2002년 7월 9일자 3면) 속보=00휴게소에 근무하는 김모씨의 성희롱 피해 사건과 관련, 충북 지역 사회·여성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9일 오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후략)

B신문:(2002년 7월 3일자 11면) 직장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가 직장 상사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자 시민 단체들이 검찰과 노동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후략)

(2002년 7월 10일자 11면) 충북00회를 비롯한 대전·청주권 23개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00휴게소 성희롱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9일 오전 청주지방 노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희롱 이중피해 여성 김00」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후략)

A방송: (2002년 7월 2일 20:00 방송)

앵커: 00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달 명예 훼손혐의 등으로 구속된 51살 김모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후략)

(2002년 7월 6일 20:00 방송)

앵커: 경부고속도로 모 휴게소에서 근무하다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51살 김모 씨는 휴게소 동료 여직원 6명과 함께 직장 상사 박모 씨를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했습니다.(후략)

C신문: (2002년 7월 9일자) 성희롱 피해자가 되레 ‘명예훼손죄’등의 명목으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져 여성, 노동 단체들이 항의에 나섰다.(후략)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본인이 00휴게소에 같이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를 수 차례 성희롱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달라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 측은 보도에서 김모씨가 조리실 근무자 신청인을 비롯한 남성 직원 3명으로부터 수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신청인은 김모 씨 외 4명으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고발된 일이 있으나 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회사 자체의 조사와 노사 양측의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노조 측은 이를 여성00회에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를 하였고 회사 측은 신청인을 00 휴게소 인사발령을 냈지만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당국에 구제 신청을 낸 것이 이유 있다 하여 조리실장으로 복직하게 되었다.

신청인 측은 이러한 무혐의·원직 복귀에 성희롱 피해 고발자 김모 여직원이 반발하면서 공개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계속하였고 신청인은 김씨를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김씨를 구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신문과 방송들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대전·충북 지역 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 신청인이 하지도 않은 성희롱을 정말로 한 것처럼 인식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처리결과와 평가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이 일부 매체에서(A방송 제외) 받아들여져 해당 언론사들이 신청인 요청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평가하여 볼 때 신청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은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 김모씨의 구명 운동의 입장에서 서 있는 시민·노동 단체들의 2차에 걸친 기자 회견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가운데서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 측에서 볼 때 뉴스 현장에서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이며 이때 취재원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자체의 진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취재 측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 논리”에 입각한 “객관주의” 보도 입장은 취재원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자체의 良否에 의하여 보도의 良否가 좌우된다는 면에서 자못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기자회견」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보도문의 서두 실마리 문장에 해당되는 리드(Lead)에서는 보도문 전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취지를 인용 부호 없는 서술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기자회견 내용의 보도라도 그 회견 당사자들의 주장에 언론이 동조하는 것으로 비쳐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언론사는 시민·사회 단체의 회견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죄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그것은 이들의 회견에 의한 피해이지 엄밀히 따져 언론의 공표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언론사의 면책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취재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인용 부

호도 없이 자가보도의 형식으로 지면에 내보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취재 측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3. “총장과 그의 측근들이 독선적이고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는 논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중재심리사건과 달리 기사 종류 중에서 객관성에 입각해서 쓰여지는 뉴스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주관에 의해서 작성되는 논설(칼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에서는 동법에 의한 반론 보도 청구 대상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함으로써 사실 기사(뉴스 보도기사)와 주장 기사(논설·칼럼)를 별도로 구분하여 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관계 법리상 사실 보도와 의견 표명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보통²⁾인 점에 비추어 언론 중재에 있어 양자를 어떻게 달리 취급해 주어야 옳은가가 논점이 될 수 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인 한 공개적인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언론 측 입장과 비록 「공익에 관한 언론」이라도 私人的 인권과 권익을 현저히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간의 대립을 엿볼 수 있는 다음의 사례를 재음미해 보고자 한다.

논설문면 제목: 교육부의 00대 해교 행위

내용: 00대가 이토록 철저히 망가지는데 공헌한 해교자(害校者)로서 00 학원 관선이사회와 교육부가 서로 선두를 다툰다. 이 중 어느 누구를 일등공신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현직 총장이 독직(瀆職) 사건으로 구속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00학원 관선이사회와 교육부는 00대를 방치했다.

개선 장군이 돼 돌아 온 총장과 그의 측근들이 00대를 통치하는 방식이 ‘공포정치’ 수준이며, 별이는 일마다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감독 기관인 관선이사회와 교육부는 직무를 유기했다. ‘곧 터진다’는 내부 구성원과 언론의 황색 신호를 모함이라 일축하지 않고 겸허하게 귀 기울였다면 사전에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후략)

신청인주장 신청인 00대학교(총장 000)와 학교 법인 00학원(이사장 000)은 00일보 2002년 11월 19일자 6면 『교육부의 00대 해교 행위』라는 제목의 컬럼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위 칼럼은 허위의 사실, 혹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하여 00대와 00학원, 그리고 00대 총장과 보직교수 등에 대하여 매도를 포함한 대단히 악의적이고 왜곡된 논지로 일관하면서 00대에 대하여 “칼을 대야 한다”는 극단적인 폭언을 결론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사실보도와 이에 기초한 공정한 논평이라는 언론 본연의 자세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00대 전체와 00학원, 그리고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또한 00대 7,000여 학생을 위시한 대학 구성원과 00학원 산하 구성원 모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폭거이다. 이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반론 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후략)

처리결과와 평가 피신청인인 00일보 측은 신청인인 00학원과 00대학교의 반론보도 청구

2) 권기훈,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 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언론중재」, 2002 봄, 53-71

내용을 받아 들여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과 같은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종결된 사건이다.

신청인 측은 00대가 인사 및 재무 행정, 학사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였으며 현재 재판중인 도서관 신축 관련 혐의에 대하여도 무죄임을 확인 받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0일보는 신청인 측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왜곡된 논지의 논설을 게재함으로써 신청인 측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 손상 및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일반 중재 사건과 달리 뉴스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논설(칼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원래 관계 법리에 따르면 언론에 의한 명예 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경우로 제한되고 단순히 타인이나 사건에 관한 비평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는 명예 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³⁾

특히 미국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 공중의 관심사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공적 활동과는 무관한 사생활의 폭로나 인신 공격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표현이나 용어가 아무리 신랄, 격렬하더라도, 또 그 논평의 결과 피논평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에도 논평자에게 명예 훼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⁴⁾ 이에 반해 우리 법원은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우리 법원은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고, 그 경우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⁵⁾

어쨌든 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 측 청구를 수용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결론이 나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논설이나 칼럼에서도 명예 훼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라고 하겠다.

IV. 시사점과 논의점

위에서 다룬 주요 사례들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의 경우는 기자가 할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따로 없을 때 선의의 시민을 도구로 삼아 그림을 짜맞추기 한 경우로 명백히 피해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의 경우는 제3자에 의하여 제보된 자료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료 자

3) 권기훈, 상계 논문

4) 幾代通, “アメリカ法における 名譽毀損と Fair Comment- 事實の 眞實證明に 關して”, 『未延還曆記念·英美私法論集』, p.26

5) 권기훈, 상계 논문

체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료에서의 논지방향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는 어떤 사안에 관한 주관적 논평 기사의 경우, 사실 적시 보도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명예훼손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느냐를 고찰해 볼 수 있게 해준 사례라 하겠다.

위에서 다룬 사례들은 2002년도에만 전국에서 다루어진 총 511건의 사례 중에서 단 3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3건만을 다룬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시대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사건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평범한 시민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언론에 의한 명예권이나 인격권의 침해 사례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언론 분쟁의 사태가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도 언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는 시민들과 언론 측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먼저 시민들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잘못된 보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중재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⁶⁾

그런데 문제는 당해 언론사에 직접 시정 요구를 하면 이것이 즉각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의나 이의 제기를 어떻게든 따돌리려 하거나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는 항의자를 협박하여 물리치려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언론사가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장 강력한 타율적 방법으로 법원에 제소하여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손해배상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까지는 손해 배상 인용액이 3,000만원 미만이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3,6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95년 이후에는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언론의 책임을 점차 엄중하게 묻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⁷⁾ 이를 통해 볼 때 시민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한 가지 유효한 피해회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에 호소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측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 비용 등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 제도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법원보다 이용이 편리한 분쟁 해결제도로서 언론에 관한 분쟁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화해와 절충의 장

6) 강정홍, “자유언론과 명예 훼손”,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2002. 11. 29.

p.16

7) 차재영,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2002. 10. 18.

p.11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8)

한편 원치 않는 언론 분쟁 사태를 신속하고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언론 측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자율적인 방법과 타율적인 방법이 있다.9) 자율적인 방법은 다시 사전 예방과 사후 처리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 침해에 관한 가장 확실한 사전 예방 방법은 기자의 자기 검열이다.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탁월한 직업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자의 자기 검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사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언론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직무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을 이와 같이 언론종사자의 자기 검열 및 자체교육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언론기관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그릇된 보도를 바로 잡고 예측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체 통제 장치를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주요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자체평가인) 제도가 그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의사,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에 의한 기사 사전 열람제와 전문기자제 같은 제도를 두어 오보와 허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사후 구제의 방법으로는 언론사 자체의 자율적 피해 구제 기구를 통한 것과 신문 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에 의한 사후구제 등이 있으나 후자 둘은 엄밀한 의미의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가장 간편하고도 효율적으로 언론에 의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종사자의 자기 검열, 옴부즈맨 장치, 기사 사전 열람 장치와 같은 자율 통제 장치를 통하여 언론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어려운 지방지와 지역방송의 경우 이미 국가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중재위원회와 같은 장치를 나름대로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한다. 즉 본의 아니게 있을 수 있는 실책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자료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체 교정과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다.

V. 맺음말

언론 중재 제도의 기능관은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언론중재 제도가 처음 생길 당시에는 5공 정권의 언론기본법 치하에서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적어도 언론 측을 위해서는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사회적 사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발생하는 대국민 언론 분쟁이 법원의 소송까지 가는 것을 차단해주는 「언론보호」장치로까지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언론보호자」로서의 언론중재관도 다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것은 언론중재 제도가 언론으로부터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한 시민이 일반 시민으로서 사실상 이용하기에 어려운 법정 투쟁을 거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피

8) 차재영, 상계논문, p. 6

9) 이병섭, “언론보도의 면책 요건과 한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2002. 5.

10. p.5.

해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 주는 「시민보호자」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어쨌든 「언론통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 중재 제도의 존재 이유의 무게 중심을 「언론보호」쪽에 둔다는 것과 「시민보호」쪽에 둔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거나 상호 배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중재」란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조정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그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만 「언론」에 비하여 「시민」 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금까지 취약했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뿐이다.

언론 중재 제도는 가망피해자인 시민측과 언론기관 측 양 당사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똑같이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이는 가망피해자인 시민 측을 위해서나 언론기관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언론 중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언론 측에서도 이 제도를 단지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도 막게 해주는 -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역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 소극적 방어 장치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시민 측으로부터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체 교정과 자기 향상에 이르게 하는 자극원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다.

그런가 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측으로서도 중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시민의 인격권 보호」라고 구호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 시민 의식은 급격히 바뀌고 있고 다매체 다채널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정보 혁명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과잉에 따라 언론 보도에 의한 사회적·개인적 권익 침해의 빈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존 기능에 덧붙여 시민을 위한 교육 계몽의 기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다.